



의안번호	제59호
------	------

<p>논산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4. 13.

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9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일부개정령에 따라,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·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정비.
 - 현행 : 「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
 - 개정 : 「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
- 나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함.(안 제9조)
- 라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·지원을 위한 포상 조항을 신설함.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 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3. 10. ~ 2022. 3. 30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 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(041-635-427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산시 본청, 논산시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·동
2. 논산시의회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논산시가 설립한 공단

제5조(우선구매 촉진)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

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

제6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구매 목표액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)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품개발, 산·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
2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·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·마케팅 비용

제8조(우선구매 협조)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, 기업체 및 그 밖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평가)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·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·단체·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복지인권과장	김 배 자
	장애인팀장	최 영 숙
	담 당 자	이 은 주 (746-536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논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</p>	<p>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논산시 관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논산시청(이하 “시청”이라 한다)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.</p> <p>3. “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가족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.</u></p> <p>4. <u>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"「특별법」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</u></p>	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3조(책무) <u>논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u></p>
<p><u>제3조(적용범위)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시청과 소속 행정기관</u></p> <p>2. <u>시청이 출연한 기관</u></p>	<p><u>제4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논산시 본청, 논산시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·동</u></p> <p>2. <u>논산시의회</u></p> <p>3. <u>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논산시가 설립한 공단</u></p>
<p><u>제4조(우선구매 촉진)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 장애인 생산</u></p>	<p><u>제5조(우선구매 촉진)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시설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와 「특별법」에 따라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</p>	<p><u>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.</p>
<p><u>제5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</u></p> <p>① <u>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 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</u> <u>2.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</u> <u>3.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</u> <u>4.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</u> 	<p><u>제6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)</u></p> <p>① <u>시장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구매 목표액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우선구매 의무의 범위)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 및 별표1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 분류표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7조(생산·유통·판매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·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,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)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품개발, 산·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 2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·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·마케팅 비용
<p>제8조(구매증진 협조 등)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·단체, 학교법인, 종교시설,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우선구매 협조)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공공단체, 기업체 및 그 밖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</p>	
<p><신설></p>	<p>제9조(평가)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10조(포상)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·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·단체·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.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복지인권과장 김 배 자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① “중증장애인”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(이하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
③ “공공기관”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제6조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

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
-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
2.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3.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

□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

제10조(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1 이상(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)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44조(생산품 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- 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- 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

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36조(장애인복지시설)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컴퓨터를 말한다.